금융위원회고시 제 2019 - 26 호

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4(금리인하 요구 등)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

1.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,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

2.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

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.

④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,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, 절차 및 기록의 보관·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29조의3제2항제1호 본문 중 “통장 또는 인감이 없음에도”를 “본인 확인을 하

2080366 / 2019-06-14 18:1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지 않고”로 하며, 같은 호 단서 중 “다만,”을 “다만, 통장과 인감이 있는 경우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은행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8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감독원장은 이 법 또는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인가·승인 등(이하 이항에서 “인가등”이라 한다)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(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감안하지 아니한다)을 경과한 인가등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.

1. 법 제8조에 따른 인가(예비인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):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

2. 법 제8조에 따른 인가(예비인가를 거친 경우):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

3.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: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

4. 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: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(단,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요건의 심사인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)

5. 법 제55조에 따른 인가 :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

6.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 : 인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

7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인가 :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

2080366 / 2019-06-14 18:1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제94조제1항 중 “제25조의3까지”를 “제25조의4까지”로 한다.

별표 2-2 제3호 다목 중 8)을 삭제하고, 제5호 다목 중 9)를 삭제한다.

별표 2-8 제2호 가목 중 “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”을 “ 최근 5년간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가 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은행업 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한 인가요건, 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한 승인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2-2 및 별표 2-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2080366 / 2019-06-14 18:1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5조의4(금리인하 요구 등)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 1.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,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.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③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. ④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, 심사결과 등 관련 기

2080366 / 2019-06-14 18:1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	록을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 ⑤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, 절차 및 기록의 보관·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
제29조의3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① (생 략)	제29조의3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영 제20조의2제5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, 은행은 그 처리사항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음에도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. 다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45조 및 「노인복지법」 제48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, 복지실시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의 장에 대해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1.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----------. 다만, 통장과 인감이 있는 경우나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
2080366 / 2019-06-14 18:1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은행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.
제84조의2(보고 주기) (생 략)	제84조의2(보고 주기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감독원장은 이 법 또는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인가·승인 등(이하 이항에서 “인가등”이라 한다)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(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감안하지 아니한다)을 경과한 인가등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. 1. 법 제8조에 따른 인가(예비인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):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2. 법 제8조에 따른 인가(예비인가를 거친 경우):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

2080366 / 2019-06-14 18:1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	3.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: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4. 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: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(단,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요건의 심사인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) 5. 법 제55조에 따른 인가 :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6.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 : 인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7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인가 :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
제94조(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) ① 제4조부터 제25조의3까지, 제26조제1항제2호·제3호·제4호 및 제3항, 제26조의2,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33조부터 제47조의2까지, 제50조, 제51조,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, 제53조제1항 단서, 제5	제94조(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) ① ------- 제25조의4까지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2080366 / 2019-06-14 18:1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4조, 제59조, 제63조의2, 제74조, 제79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은 한국수출입은행(이하 “수출입은행”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2080366 / 2019-06-14 18:1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